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2. 20.(목)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창훈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20호
- 발 의 일: 2025년 2월 3일
- 발 의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2. 제안사유

-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치매 환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바,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5. 검토의견

-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치매안심 센터 설치’를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여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935,087명으로 매년 약 5만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8년간 전체 치매상병자¹⁾수는 2015년 518,500명에서 2022년 1,000,07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치매상병자의 총 진료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1명당 진료비는 약 280만원, 치매환자 1인당 연간

1) 치매상병코드(6개: F00~F03, G30, G31)를 주상병으로 받고, 입원 또는 외래 또는 약국을 1회 이상 이용한 사람(사망자 제외)

관리비용은 약 2,220만원으로 국가치매관리비용은 20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의 급증에 따라 정부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8년 「치매종합관리대책(’08~’12)」을 수립·발표하고,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 2017년에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돌봄 부담 완화 및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2019년에는 ‘치매안심병원²⁾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2024년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치매환자가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달성군민의 건강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병원

※ 참고자료

○ 2023년 기준 대구시 치매 현황

대구시 치매환자 유병률은 60세 이상은 7.16%, 65세 이상은 10.09%

단위: 명, %

구 분	6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환자수	유병률	노인인구	치매환자수	유병률
대구시	657,935	47,132	7.16	455,069	45,912	10.09
중구	22,200	1,880	8.47	16,526	1,846	11.17
동구	104,584	7,771	7.43	74,884	7,597	10.14
서구	59,771	4,145	6.93	41,815	4,037	9.65
남구	48,727	4,023	8.26	35,974	3,948	10.98
북구	106,978	7,331	6.85	71,956	7,117	9.89
수성구	104,571	7,956	7.61	73,357	7,770	10.59
달서구	138,417	8,901	6.43	91,310	8,619	9.44
달성군	59,388	3,814	6.42	39,069	3,689	9.44
군위군	13,301	1,311	9.86	10,179	1,290	12.68

자료원 : 공공데이터포털(보건복지부_시군구별 치매현황(2015년~2023년))

주1.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수 : 소수점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달성군 등록 치매환자

2020년 1,538명 → 2024년 2,449명으로 911명 증가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
전국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0.33	10.33	10.33	10.41	-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840,191	886,173	935,086	1,010,400	-
달성군 65세 이상 인구수**	33,089	35,530	37,737	40,217	42,318
달성군 등록 치매환자 수	1,538	1,618	1,565	1,827	2,449

자료원 : *2016년 전국 치매역학 조사 **국가통계포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2024.10.31.

주1 : 등록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를 말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21호
- 발 의 일: 2025년 2월 3일
- 발 의 자: 신동윤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2. 제안사유

- 게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게임 이용자는 약 33.4억 명으로 이스포츠는 세계적인 대중 여가로 성장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게임 이용률은 전국민의 62.9%³⁾로 대표 여가 생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이스포츠산업 기반 마련을 통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2016년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 2019년부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부산, 광주, 대전, 경남 진주에서 개관하였으며 2026년에는 충남 아산시에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3) 한국콘텐츠 진흥원 '2023 게임이용자 실태조사(10~64세 1,000명 대상 조사)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설 유치 등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학교 등과 연계한 이스포츠 해설가 양성 과정 교육, 이스포츠 데이터·마케팅 전문 과정 신설과 게임사와 MOU 협약을 통한 이스포츠 대회 개최,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이스포츠를 소재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달성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22호
- 발 의 일: 2025년 2월 3일
- 발 의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2. 제안사유

- 공사장 인근 낙하물 사고 등 꾸준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최근 건설공사 시 낙하물 사고, 공사 차량과 건설 자재의 인·도로 점령, 보행자 안전통로 미설치 등으로 공사장 인근 주정차 차량의 파손과 보행자와 주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국일보, 21.08.25.) 대구 어린이보호구역이 아파트 공사로 사고위험 지역 전락
 - (영남일보, 23.01.20.) 대구 공사장서 떨어진 시멘트로 차량 여러대 파손...“안전 조치 마련 절실”
 - (연합뉴스, 24.06.14.)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아 50대 근로자 사망
 - (경상매일신문, 24.07.11.) 구미 초등생 등교길 교통사고... “스쿨존 안전불감증 여전” (불법주정차 공사차량)

- (영남일보, 24.9.13.) “아이가 맞았다면 아찔” ...대구 달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틀 연속 낙하물 사고 발생
- (인천일보, 24.12.06.) 용인 고등학교 공사장에서 외벽 비계 무너져... 6명 부상

○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고 특히 보행취약계층이 많은 ‘교육환경 보호구역⁴⁾’ 및 ‘다세대 공동주택’ 인근 공사장 등에 대하여 추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명문화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보행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담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